

#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方向과 課題

丁 奉 恩

(保險開發院 調查研究室 · 海外調查擔當役)

## 目 次

- I. 머리말
- II. 主要國의 保險仲介人 規制 體系
- III.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方向
- IV. 保險仲介人制度 導入에 따른 課題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판매채널은 보험회사의 被傭者로서의 募集人, 代理店, 保險仲介人, 直拔 및 通信販賣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판매채널을 총칭하여 保險仲介者(intermediary: EC등의 경우) 또는 保險募集을 할 수 있는 者로 불리운다.

이와같은 각 판매채널의 法的 地位, 權限, 業務의 範圍, 役割 등은 모두 서로 다르나 자기 나름대로의 意義를 갖고 있다. 따라서 保險會社는 각 판매채널을 어떻게 조합하여 이용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통하여 募集組織 戰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募集組織을 평가 판단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要因이 內在된다.

첫째로 生産要素간의 코스트 비교에 의한 保險生産의 經濟的 效率性이다.<sup>1)</sup> 다시말하면 일정한 產出量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판매채널을 얼마나 이용하면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生産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資本要素 價格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보험회사는 支店組織의 擴充이나 專屬募集人의 증가보다도 獨立代理店이나 保險仲介人 등의 판매채널이용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費用上의 誘引을 갖게 된다.

둘째로 費用과 관련한 企業의 安定性이다.<sup>2)</sup> 기업의 固定費用과 變動費用의 構成比率는 산출량과 관련한 經營의 安定性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短期的으로 產出量이 변화될 경우 기업의 費用構成이 상대적으로 낮은 固定費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높은 固定費用을 안고 있는 기업보다 安定的인 것이다. 기업의 總生産量이 작은 소기업의 경우 支店方式에 비해 소액의 間接費 밖에 들지 않는 保險仲介人 方式의 거래 등이 산출

1) R.L. Carter, *Economics & Insurance*, 2nd ed. Kluwer Publishing, 1978, ch.5 參照.

2) Ibid.

량의 급격한 변화시에 有利하다고 할 수 있다.

세제로, 판매채널의 統制可能性과 長期的 關係이다. 어떠한 판매채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반드시 비용적 측면 등의 經濟的 效率性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代理店, 保險仲介人 등의 手數料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도 모른다. 즉, 비전속판매채널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統制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판매채널을 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獨立代理店이나 保險仲介인에게 의존적이 되어 거꾸로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배려하여 높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여 專屬募集채널을 사용한 支店經營方式을 선택하기도 한다.<sup>3)</sup>

이와같이 볼 때 각 판매채널은 나름대로의 有用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專屬募集人, 專屬代理店이 主流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93년 4월에 도입된 複數代理店과 '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獨立代理店の 도입을 계기로 판매채널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의 판매채널이라 할 수 있는 保險仲介人の 導入을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保險仲介人은 保險業法上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 脆弱, 募集組織의 未發達, 保險仲介人 活動基盤의 未造成, 관련규정의 施行令 不在 등으로 인하여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保險仲介人制度는 향후 판매채널의 多樣化, 보험계약자의 便利性 提高 등에 따라 導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따라 현행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補完하여 制度的 裝置를 構築해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主要國의 保險仲介人制度를 참조,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照明하여 어떠한 形態의 制度가 바람직한가 그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단 보험중개인 이외의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인의 설명에 필요치 않은 한 검토의 對象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 II. 主要國의 保險仲介人 規制 體系

### 1. 英國

英國은 3개의 仲介人 規制法律에 의하여 保險仲介人 規制體系를 形成하고 있다. 이 3개의 法律이란 1977年 保險仲介人(登錄)法, 1982年 로이드法, 1986年 金融서비스法인데 각기 규제하는 分野가 다르다.<sup>4)</sup>

#### 가. 1977年 保險仲介人(登錄)法(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Act 1977)

영국의 仲介制度는 一律적으로 制定되지 않고 判例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15~17세기의 튜더 왕조시대에는 해외무역이 활발하였고 그에 따라

3) 일반적으로 전속모집채널을 관리 감독하는 支社制度(Branch system)가 통제·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정경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대형사가 주로 이용하고 총대리점제도나 보험중개인제도는 중소형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日本生命保險協會, 「最近の歐美生保マーケティングの動向」 1988年, 東京, p.58)

4) 이하의 논술은 Sediwick Risk Management Japan 대표인 日吉信弘氏가 '94. 3. 14일 부터 6. 22일에 걸쳐 日本保險毎日新聞에 투고한 「保險ブローカーとは何か」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海上保險의 수요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한번의 항해 거래액이 巨額이 됨에 따라 일개 보험자가引受할 수 있는 擔保許容額을 保險價額이 초과하기에 이르러 保險仲介人은 必須的인 存在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보험중개인만이 어느 보험자에게 얼마만큼의 引受가 가능한가를 알고 있어 巨額의 保險金額을 복수의 보험자에게 分割하여 引受시킬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初期의 仲介人制度는 海上保險이나 그 仲介方式에 있어 특정의 규칙이나 정형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責任範圍나 保險金支給問題를 둘러싸고 紛爭이 다발함에 따라 1575년이 되어 비로소 保險仲介人을 왕립거래소 保險局에 登錄토록 하였다. 이후 분쟁처리에 관한 專門裁判所의 설치 이외에 특별한 규제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몇개의 保險事件이 발생하여 保險仲介人規制法을 立法化하기에 이른 것이다.

1966년에 자동차보험 대형사인 Fire Auto & Marine社의 도산, 1971년에는 自動車保險의 적극적인 擴大策을 취해온 Vehicle & General社가 도산함에 따라 募集手數料 問題가 쟁점화되었다. 이 두개 회사는 自動車保險을 모집하는 데에 통상보다 높은 代理店, 仲介人 手數料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問題點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保險仲介人도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보험회사를 택하여 결국 계약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셈이다.

이외에 로이드에서도 1970년대에 사보니터사건, 사스사건, 포스게이트사건 등의 仲介人과 관련된 다액의 보험료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생명

보험부문에 있어서도 여러개의 投資管理會社가 도산했는데 사기에 의한 倒産의 嫌疑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一部 代理店은 중개인을 假裝하여 계약을 모집하고 그 계약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특정보험회사에 가지고 가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一聯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保險仲介人 規制 立法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각 仲介人團體는 英國保險仲介人評議會(British Insurance Brokers Council: BIBC)라는 전국통일조직을 만들고 통산성(영국의 보험감독관청)에 「保險仲介人規制에 관한 報告書」를 제출했다. 이 報告書를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法律이 「1977年 保險仲介人(登錄)法」이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規制機關이 「保險仲介人登錄評議會(Insurance Broker Registration Council: IBRC)」이다. 保險仲介人法은 보험중개인의 登錄, 보험중개인의 職業基準의 규제 및 그 관련 사항을 규정한 包括的인 法律이다. 또한 永續法人機關으로서 설립된 IBRC는 保險仲介人法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命令과 規則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명령 및 규칙으로서는 行動規範, 登錄과 制裁, 조사위원회의 構成, 懲罰委員會의 構成, 징벌위원회의 節次, 징벌위원회 보좌인 規則, 會計 및 事業要件, 賠償責任保險 및 補償金制度, 選舉制度 및 投資事業運營 등이 있다.

#### 나. 1982年 로이드法

1871년 로이드법의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改正을 되풀이 한 끝에 1982년 改正된 로이드법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法律의 改正 概要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법률에 따라 로이드에 의하여 로이드評議會(Council of Lloyd's: CL)를 설립하고 로이드중개인의 加入承認 및 登錄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규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懲罰委員會를 설치하여 審理를 하고, 벌금·자격박탈·제명 등의 처벌을 할 권한을 부여한다.
- ② 로이드에서의 原受·再保險 營業은 로이드評議會에서 承認을 받은 로이드중개인에게만 허용한다.
- ③ 로이드중개인은 로이드의 매니징 에이전트와 特殊關係를 가져서는 아니되고 로이드중개인의 임원은 매니징 에이전트를 겸할 수 없다.
- ④ 로이드중개인의 채무 또는 의무불이행시의 契約者保護를 위하여 로이드중개인에게 일정한 財務能力을 갖게 한다. 재무능력 확보요건은 資本金, 基金, 保險去來 專用口座, 支給餘力, 專門職賠償責任保險으로서, 이중 支給餘力과 專門職賠償責任保險<sup>5)</sup>만 로이드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나머지 요건은 IBRC의 규정에 적용받는다.

#### 다. 1986年 金融서비스법

1980년대 投資者保護의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6년에 투자관계의 金融서비스業인 證券業, 先物去來業, 投資諮問業, 投資信託業, 生命保險 및 生命保險仲介人業<sup>6)</sup>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法律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중개인이 포함되게 된 데에는 두가지 背景이 있다. 첫째로는 生命保險을 취급하는 중개인이 企業年金基金의 운용 어드바이저로서 뿐만 아니라 個人年金市場에 있어서도 투자어드바이저로서 기능을 할 정도로 보험 중개기능을 넘어 각종 투자서비스를 하기에 이르렀고 둘째로는 1978년 金融法 改正에 의하여 생보사의 投資裁量이 커진 데에 기인한다.

금융서비스법의 投資仲介人에 관한 규정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① 公認自律規制團體(Recognized Self-Regulating Organization: SRO)인 投資仲介者·管理者·仲介人規制協會(FIMBRA)에 의하여 認可받은 자가 아니면 長期保險契約, 從業員年金基金, 個人年金保險 등, 長期事業에 상당하는 투자물건의 거래, 중개, 관리, 투자조언, 집합투자계획의 입안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② 주무장관은 公認自律規制團體에게 그 권한을 이관한다. 또한 公認自律規制團體는 규칙(Guidance)을 설정하여 仲介人 등에게 그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認可業者의 登錄을 취소시킬 수 있다.
- ③ IBRC는 保險仲介人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는 투자중개인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투자중개인회사가 本法에 의한 認可業者일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본법에 의한 自律

5)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부보액은 취급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전년도 총보험중개인수수료의 4배에서 6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그 최저부보액은 300만 파운드, 최고부보액은 3,000만 파운드로 규정되어 있다.

6) 英國에서는 1986년 金融서비스법에 의하여 생명보험도 투자업의 일종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중개인이라는 용어는 주로서 생명보험중개인이나 연금의 자산운용컨설팅을 하는 자로 이해하여야 한다.

規制團體에 협력하여야 한다.<sup>7)</sup>

- ④認可를 받지 않고 投資事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금고형이 적용된다.

#### 라. 保險仲介人 規制機構 및 有關機關

英國의 保險仲介人은 이상에서 설명한 세개의 법률에 의한 規制體系를 形成하고 있다. 保險仲介人法이 일반 보험중개를 담당하는 保險仲介人을, 로이드法이 로이드마켓에서 보험중개활동을 하는 로이드중개인을, 그리고 金融서비스法이 貯蓄型保險의 중개활동을 하는 投資仲介人을 규제하고 있다.

法的規制機關으로서의 보험중개인법을 정부기관인 IBRC가, 로이드법을 민간기관인 로이드評議會(CL)가, 금융서비스법을 민간단체인 證券投資委員會(Securities & Investments Board Limited: SIB)가 담당하고 있다. CL과 SIB는 민간기구로서 公認自律規制機關(SRO)이다. 특히 SIB는 금융서비스업 全般을 규제하기 때문에 投資仲介者·管理者·仲介人規制協會(FIMBRA)에 상당부분의 규제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任意團體의 규제시행에 대한 協助體制로서 각 仲介人協會가 諸般法規의 遵守를 회원가입의 條件으로 하는 등 自律的인 規制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有關機關으로 대표적인 단체가 생손보 중개인의 80%가 가입되어 있어 영국보험중개인의 대표단체라 할 수 있는 英國保險投資仲介人協會(British Insurance and Investment Brokers Association: BIIBA)와 중소보험중개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保險仲介人協會(The Institute of

Insurance Brokers: IIB)가 있다.

## 2. 美國

미국은 保險事業에 대한 규제 감독이 1945년 McCarran-Ferguson법에 의하여 각 州政府에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保險募集에 대한 규제도 각 州의 保險法에 의거하여 주 보험청이 시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제국에서 保險募集의 대부분을 自律規制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주 보험청에 의한 單一 規制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州에 따라 규제의 내용, 방법이 상당한 差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켄터키, 미시건, 미시시피,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주 등의 12개주에서는 保險仲介人制度를 認定하고 있지 않다. 또한 保險仲介人制度를 인정하고 있는 주라 하더라도 일부 州에서는 法的으로 個人資格의 仲介人을 認定하지 않고 法人資格의 중개인만 인정하는 주도 있다.

이와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법이 他州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표적인 존재이므로 뉴욕주법상의 仲介人規制 項目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뉴욕주법 제21절은 代理店, 仲介人, 損害査定人, 諮問人 및 仲介者에 관한 조항이다. 保險仲介人에 관한 主要 規制事項으로서 보험중개인의 정의, 면허의 취득요건 및 기준, 결격조항, 면허의 신청·취소·정지, 수수료, 과대수수료의 금지, 비표준보험시장중개인의 의무, 보험료수령권, 광고, 중개인으로서의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규정에 의하여 州保險廳 監督官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7) 대부분의 투자중개인은 IBRC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FIMBRA에 등록되어 있다.

自律規制次元에서는 全國保險仲介人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Brokers : NAIB) 등이 회원규약 등에 의하여 法規遵守를 위한 자율적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 3. 獨逸

독일은 保險監督法에 의한 實體的 監督主義를 표방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商業의 自由를 존중하여 모집에 관한 규제는 保險監督法上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모집인, 중개인 등에 대해서도 免許制度나 登錄制度도 없고 試驗이나 教育 등의 일정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法的으로는 누구나 보험모집자가 될 수는 있다. 독일의 모집규제에는 立法的 規制는 없지만 行政的 規制는 존재한다. 보험감독법 제81조 2항에 규정된 監督官廳의 命令 및 行政規則 發動權에 의거하여 통첩, 지침 등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保險事業競爭基準」에 보험모집종사자의 採用基準 要件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독일에서도 보험중개인 등의 免許·資格制度의 導入이 제기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免許制度化 또는 資格制度化라는 형태의 進入 規制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sup>8)</sup>

현재로서 保險仲介人 規制를 담당하는 기관은 自律規制團體인 獨逸保險仲介人聯合協會(Federal Association of German Insurance Brokers e.V.: BDVM)이다. BDVM이 200여 가까이 있는 독일 보험중개인회사를 규제하고 있다. BDVM은 조직 내에 承認委員會를 두어 회원가입시 審査를 한다. 회원에 대하여는 專門知識 習得의 정도, 賠償資力

基準의 충족을 要求하는 등의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회원으로서의 객관적 조건, 주관적 조건, 회원으로서의 불승인 절차 등 英國의 IBRC가 하고 있는 규제와 類似하게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III. 保險仲介人 制度의 導入方向

우리나라 保險業法 제2조 5항에는 「保險仲介人이라 함은 獨立的으로 보험계약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로서 제149조의 규정(財務部長官의 許可)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자」라 규정되어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保險仲介人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保險業法 제3장 144조에서 159조에 保險仲介人에 관한 諸規定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나열하면, 보험중개인의 定義, 許可, 허가의 取消基準, 일정기간동안의 業務停止 要件, 報告와 檢査, 재무부장관의 命令權, 自己募集의 禁止, 재무부장관에 대한 申告事項, 募集禁止行爲,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賠償責任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 중에는 개선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통령령, 재무부령 등에 의해 세부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향후 保險仲介人制度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어떠한 方向으로 導入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外國事例를 참조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 保險仲介人의 定義

보험중개인을 定義하기 위하여는 우선 保險仲介人이 보험당사자들 간에서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

8) 日本生命保險協會, 『西ドイツにおける生保募集制度について』, 1989, pp.43-46 參照.

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다수의 보험 중개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危險管理業務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危險管理業務는 등록부統制技術과 리스크財務技術로 분류된다. 리스크통제의 수법으로서는 리스크回避, 損失統制, 分離, 結合 등이 있고, 리스크財務의 수법으로서는 保有, 保險을 통한 리스크移轉, 保險 以外の 리스크移轉이 있다. 위험 관리체계에 있어서 보험은 危險을 管理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手段일 뿐이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내에 리스크매니저를 두고 있다. 리스크매니저는 기업의 總體的 危險을 파악하여 확인·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중 보험회사에 移轉해야 할 위험을 판정하여 付保하는 데 이 경우 리스크매니저는 보험회사의 担保능력, 서비스 및 보험코스트를 고려하여 附保할 保險會社를 選擇하게 된다.<sup>9)</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리스크매니저는 자신의 기업의 특수한 事情과 問題點을 이해하며 리스크를 高度의 手法로 분석하여 保險市場에서 最小의 코스트로 最適補償計劃을 설계해 줄 專門保險知識人을 필요로 하게 된다.<sup>10)</sup>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專門募集人이 바로 保險仲介人이다. 실제로 기업의 리스크매니저는 중개인, 독립대리점, 자문인 등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중개인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保險仲介人이란 被保險者가 保險會社에 付保할 리스크를 最適의 方法으로 仲介하는 者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1623조에는 「보험자를 대신하지는 않으나 보수를 받고 他人을 위하여 보험자와 交渉하는 者」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뉴욕주 보험법 2101조에는 「소정의 보수를 받고 자기 이외의 被保險者 또는 免許保險仲介人을 위하여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체결의 勸誘, 交渉 또는 周旋을 하거나 危險을 判定 또는 保險에 加入케 하는 個人, 企業組合, 非營利團體 또는 株式會社」라고 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험법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保險契約 또는 再保險契約를 勸誘, 交渉, 周旋하거나 이를 援助하는 者」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보험규제법상에는 保險仲介人의 定義를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保險監督法上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商法典 93조 1항에 「계약관계에 의하여 위탁을 받지 않고 他人을 위하여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供給이나 讓渡, 保險, 물품의 運送, 冒險貸借, 선박의 貸貸借 및 기타 商去來의 目的物에 관한 계약의 媒介를 營業적으로 하는 자는 商事仲介人의 권리의무를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다.

日本은 현재 보험중개인 導入을 위한 保險業法改正作業을 推進중에 있으나 日本商法 543조의 「仲介人(仲立人)이란 他人間の 商行爲의 媒介를 業으로 하는 者」라는 규정을 援用하여 「保險仲介人이란 保險契約者와 保險會社間の 保險契約 締結을 仲介하는 者」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1)</sup>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2조 5항의 규정 즉 「獨立的으로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9) C.A.Williams, Jr. & R.M.Hein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5th ed., 1985, pp.541-560을 參照.

10) Ibid., pp.563-564를 參照.

11) 日本經濟新聞, 1994年 5月 23日字.

者」는 普遍妥當性있는 定義라고 생각되어 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定義 속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하여」라는 代理의 原則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英國의 1971년 Eagle Star社 사건의 判決文에서 밝혀진 바대로 「保險仲介人の 基本的 約束은 保險契約者の 代理人」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2. 保險仲介人の 許可基準

美國은 保險仲介人을 免許主義로 하는 반면, 英國 및 獨逸은 登録主義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保險業法에는 許可主義로 되어 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해제로서 경찰행위에 속하나 登録이나 免許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許可主義도 허가요건이 규정되어 透明性을 제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등록이나 면허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위험관리업이 발달해 있고 보험에 대한 認識과 市場秩序가 발달한 영국, 미국 등에서는 登録이나 免許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危險管理에 대한 인식이나 시장질서, 보험인식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登録主義의 형태를 채택하게 되면 과거에 歐美諸國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保險仲介人の 副作用이 나타나 公益을 阻害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에 대한 허가주의는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許可基準은 諸 外國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國際性, 客觀性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선 英國의 경우를 보면 IBRC법 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認定機關의 교육을 받은 후에 부여된 자격으로 IBRC가 인정한 자격일 것
- ② 영국 이외에서 부여된 자격으로서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일 것
- ③ 5년 이상 保險仲介人으로서의 職務經驗 또는 2개사 이상의 보험회사의 常勤代理店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④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고 동시에 3년 이상 상기 ③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 ⑤ 5년 이상 상기 ③의 사업을 하는 자의 使用人 또는 保險會社の 使用人일 것
- ⑥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고 동시에 3년 이상 상기 ③에 정한 사업을 하는 자의 使用人 또는 保險會社の 使用人일 것
- ⑦ 5년간 保險仲介人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동등의 知識 및 實務經驗을 갖는 자
- ⑧ IBRC가 인정한 자격을 갖고 동시에 3년간 保險仲介人으로서 사업을 하는 자와 동등의 知識 및 實務經驗을 갖는 자

美國의 경우도 이와 類似하다. 免許申請 직전 3개년간에 通算 1년 이상,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하에서 정규의 被傭者이었으며 동시에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등 1개 이상의 保險部門에서 契約締結 또는 損害査定에 관한 責任있는 保險職務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로 9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시험합격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한 후에 保險仲介人으로서의 信賴性, 能力 등 기타요건을 충족한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때 면허가 부여된다. 특히 英國을 포함한 EC의 경우는 域內서비스 提供의 자유화로 EC內 他國에서의 보험중개인 經歷을 인정하고 있으나 美國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외국에서의 保險仲介人

經歷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募集組織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93년 4월에야 비로소 複數代理店制度가 도입되었다. 이는 英國의 獨立代理店이 6개사까지 대리하고 日本의 乗合代理店이 대리회사수 규제가 없는데 비하여 2개사만 대리하는 複數代理店의 역할만 으로서는 모집조직의 선진화를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獨立代理店이 도입됨으로써 보험중개기능이 발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保險仲介人은 獨立代理店이 발전·정착되어 實質的으로 보험소비자 특히 기업의 리스크매니저에게 最適供給設計가 可能な 水準에서 도입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歐美諸國의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모집중개자중 最高의 知識水準과 最高의 實務經驗을 바탕으로 하는 자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업계 實務者나 獨立代理店에서 오랜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자가 獨立하여 保險仲介人이 되고 있다. 독립대리점이 定着되기 전에 보험중개인이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最適保險供給을 설계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많은 副作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危險管理에 대한 認識과 技法의 導入, 獨立代理店의 定着이 중요하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保險仲介人은 國內의 複數代理店에서 8년 이상 實務經驗을 쌓은 자 또는 國內의 獨立代理店에서 最低 5년 이상 實務經驗을 쌓은 자 또는 保險會社에서 最低 10년 이상 契約締結業務나 損害査定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직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職務經歷 이외에도 最高水準의 소정의 教育課程 履修, 試驗의 합격, 財務要件, 賠

償能力 등의 諸 要件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3. 保險仲介人의 賠償資力 要件

保險仲介人은 보험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자신 스스로 또는 사용인이 불성실, 오류, 허위, 사기, 부작위에 의한 義務不履行이나 모욕 중상에 의한 義務不履行, 금전 재물상의 損失, 서류의 손실 등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은 民事責任上의 損害賠償請求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專門職賠償責任保險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賠償資力 또는 賠償能力이라 불리우는 이 要件은 보험중개인의 許可要件 또는 業務開始要件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消費者保護를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賠償責任保險도 消費者保護의 充分性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영국 Signal생명 보험회사가 파산하였을 당시 배상책임보험회사는 파산은 재정상의 이유이어서 배상책임보험상의 免責條項이라고 하여 消費者 保護에 실패를 가져왔다. 이에 영국 IBRC는 보험중개인의 부주의, 사기, 부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혹은 가입희망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또는 대출을 IBRC의 권한으로 하기 위하여 補償金制度를 만들었다. 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IBRC는 보험중개인에게 일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專門職賠償責任保險制度和 補償金制度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중개인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英國에서 賠償責任保險의 가입은 認可保險者에게만 한정하

고 있듯이 國內保險者와의 계약체결을 基本原則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감독당국이 규정하는 保險證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항상 감독당국이 確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으로 부터의 例外는 있을 수 있다. 保險利用可能性(Availability)의 問題이다. 국내에서 巨額의 배상 책임보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감독당국이 認定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專門職賠償責任保險의 金額基準은 영국과 같이 일정금액의 기본요건 또는 보험중개인 報酬의 倍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保險金額의 一定比率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取扱種目別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保險仲介人の 財務要件

앞에서 논술한 賠償資力 要件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財務要件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仲介人は 독립적으로 商行爲를 하는 者이므로 보험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資本金, 營業保證金 등의 재무요건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主要國의 경우 자본금 등의 재무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특히 보험중개인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英國에서는 資本金, 運轉資本, 支給餘力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FIMBRA 규칙 5조에서는 法人인 경우 납입자본금이 1,000파운드 이상, 法人이 아닌 경우 資本計定の 합계가 1,000파운드 이상이며 동시에 회원자격에 따라 최저 2,500파운드에서 최고 10,000파운드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一般 損害保險仲介人을 규제하는 IBRC법에는 보험중개인은 항상 최저 1,000파운드

이상의 運轉資本과 1,000파운드 이상의 支給餘力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大型法人仲介人들은 任意積立金, 未處分剩餘金 및 納入資本金의 합계액이 最低資本金要件인 1,000파운드의 만배에서 십만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小型仲介人이라 할지라도 오백배 정도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보험중개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運營資金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만 계약자가 信賴하여 보험중개를 依頼할 수 있을 것이다. 英國에서 法人보다 個人에게 더 많은 資本金要件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個人保險仲介人の 信賴性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保險仲介人에게도 高額の 資本金으로 安定的인 보험중개를 할 수 있다는 心理的 保證을 계약자에게 줄 수 있도록 適正한 財務要件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保險仲介人の 區分

保險仲介人の 구분은 취급하는 保險種目, 機能, 活動地域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法的 區分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美國의 경우 법적으로는 保險仲介人(Broker), 再保險仲介人(Reinsurance intermediary), 非標準保險市場仲介人(Excess line broker)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全美에 중개망을 가지고 있는 全國規模仲介人(National broker), 1개 주 내지 수개의 주에 한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밀착형의 地方仲介人(Local broker), 당해 주내의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는 物件을 타주 또는 해외보험사에 중개해 주는 非標準保險市場仲介人(Surplus line broker) 및 보험중개인이 引受保險會社를 찾아낼 수 없을 듯한 리스크를 독자적인

루트를 통하여 찾아내 이를 보험중개인에게 連結시켜 주는 都賣仲介人(Wholesale broker)으로 나뉘어진다.

英國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損害保險仲介人, 로이드仲介人, 生命保險仲介人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주로 企業保險을 취급하는 專門仲介人(Technical broker), 特定種目과 特定地域에 한정하여 활동하며 家計保險을 주로 취급하는 非專門仲介人(Nontechnical broker) 및 企業의 保險部門이 독립하여 중개활동을 하는 機關仲介人(In-house broker)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現行 代理店の 분류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生命保險仲介人, 損害保險初級仲介人, 損害保險一般仲介人, 總括仲介人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취급종목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單種仲介人, 複數仲介人, 總括仲介人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같이 구분할 경우 생명보험중개인이거나 재보험중개인은 單種仲介人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專門職賠償責任保險, 신용보험, 보증보험, 기관·기계보험 등은 美國에서도 單種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 6. 保險仲介人の業務範圍와 權限

保險仲介人は 獨立的으로 保險契約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部分까지 업무를 遂行할 수 있다는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仲介業務 以外の 어떠한 업무를 遂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代理店は 일반적으로 契約締結權, 保險料受領權, 告知受領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代理할 法的 權限이 없는 보험중개인의 경우는 어떠한 보험자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保險料受領權은 家計性保險에 한해서는 認定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을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保險料即收의 原則에 의해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수령·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仲介人에게 保險料受領權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중개인에게는 契約締結權, 保險料受領權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保險仲介人は 보험중개 이외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겠다.

우선 美國의 獨立代理店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보면 保險料 및 解止還給金の 算出, 保險料領收證의 發行, 危險管理調査相談 및 諮問, 保險證券의 發行, 獨立損害査定人 選定權, 危險管理專門人 採用權, 小損害事故 査定權, 保險者 委任業務 등이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은 이러한 업무중 위험관리 업무 이외에는 수행치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保險仲介人は 일반적으로 仲介業務 專業主義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保險仲介會社の 營業收益을 보면 保險仲介收益과 危險管理諮問收益이 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위험관리업무는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보험중개인의 업무수행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한 仲介會社 運營의 安定性 측면에서도 危險管理諮問業은 중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12)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가계성보험 분야에 한해 계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獨立代理店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一般業務는 보험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獨逸의 경우 보험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한정된 범위내에서 클레임처리를 委任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외국에서도 보험회사의 위임에 의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保險仲介人은 保險仲介業務 專業主義를 原則으로 하되 危險管理諮問業務와 보험회사로부터 委任받은 委任業務만을 수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7. 保險仲介人과 代理店의 兼業

保險仲介人이 동시에 代理店이 되어 雙方代理를 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保險仲介人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의 代理機能과 대리점으로서 대리하는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 타보험사에 보험을 중개할 목적으로 대리점면허를 받은 자가 保險仲介人免許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雙方代理를 금지하고 있다.

英國은 과거에 雙方代理를 허용한 적이 있었으나 쌍방대리의 弊害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1982년 로이드법의 개정에 의하여 雙方代理를 禁止시켰다. 당시 로이드중개인은 로이드의 總括代理店(managing agent)회사의 支配株式를 보유하여 자기가 중개인으로서 모집한 보험을 自己의 支配下에 있는 총괄대리점에 인수시켜 로이드의 保險引受人(name)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였다.<sup>13)</sup>

保險仲介人이 동시에 代理店 役割과 仲介人 役割을 하는 쌍방대리나 겸업은 앞에서 상술한 Vehicle & General社의 사건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그 폐해는 짐작이 가고 남을 것이다. 保險仲介人에 대한 올바른 육성과 정착을 위해서는 兼業制限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8. 保險仲介人의 報酬

保險仲介人의 報酬의 종류에는 手數料(commission)와 料金(fee), 特別報酬(incentive bonus)가 있다. 미국은 이 세가지를 다 인정하지만 영국은 전통적으로 手數料方式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국제적 방식인 手數料(브로커릿지)方式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수수료방식의 가장 큰 短點은 去來保險料의 절대액이 커짐에 따라 브로커릿지도 비례하여 커져 이 때문에 大型契約에서는 브로커릿지의 할인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料金方式은 요금의 計算方式에 客觀性과 現實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금방식의 경우 料金의 決定은 보험중개인의 시간당 코스트에 仲介行爲에 소요된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하는 소위 Time record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Time recording system이 객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保險仲介人의 報酬方式은 국제적 보수방식인 手數料方式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手數料의 水準은 어떻게 決定할 것인가? 보통 수수료수준은 원칙적으로 保險仲介人과 保險

13) 申允富, 『英美海上再保險』, 삼화출판사, 1980. p.13 참조.

會社間에 自由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는 一定한 基準을 정하여 놓고 보험 중개인에게 不平等이 발생치 않도록 거의 같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sup>14)</sup>

또한 保險仲介人의 區分이나 免許種類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 않고 同一하다. 영국에서 生命保險仲介人의 경우는 생명보험회사협회(LOA, ASLO)에 의해 1983년까지 수수료가 통제되었었다. 이는 統制基準이 없을 경우 중개인은 계약자의 요망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에 계약을 중개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LOA와 ASLO의 自律規制는 非會員會社와 外國社의 수수료 인상때문에 실패하여 결국 手数料 引上을 초래하였다. 그 후 80여개사가 지원하여 最高手数料率을 管理할 生命保險手数料 登録機關(Registry of Life Assurance Commissions: ROLAC)이 발족되었다. 이와 같이 手数料統制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편파적인 조언이나 중개를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BRC 行動規範에는 보험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要求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手数料 合計額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手数料가 營業保險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자는 開示되지 않으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 LAUTRO 규칙에는 보험회사는 保險仲介人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商品明細書속에 수수료를 經過年數別 年納保險料의 一定比率로 表示하도록 되어 있다.

手数料는 어느나라이든지 가장 민원이 많이 받

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客觀性, 透明性, 公平性이 확보되고 消費者를 積極적으로 保護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9. 其他

保險仲介人은 信義와 誠實으로써 顧客의 利益을 최우선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仲介活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美國의 경우 보험중개인의 배우자, 주주, 자회사 등과 관련된 保險契約의 手数料 收入이 최근 1년간에 수수한 手数料收入總額의 10%를 초과할 때에는 보험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英國도 마찬가지로 특정보험회사에 부당하게 偏重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付保保險社가 4개사 이하이거나 또는 1개 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수입이 전체의 35%를 초과한 경우는 特定保險會社에 偏重된 것으로 간주한다.

自己契約이나 特定契約에 대한 편중은 고객과 회사 양쪽에 副作用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고객에게는 최선의 중개와 조언을 할 수 없게 되고 보험회사측면에서는 保險仲介人에 의한 지배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權限의 委任範圍를 증가시키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하게 특정중개인에게 편중되면 급격한 계약확대를 기할 수 있으나 責任經營의 弱화로 支給不能 등의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美 下院 에너지 및 商業委員會 傘下の 監督 및 調査 小委員會가 조사·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sup>15)</sup>

14) 澤登信義, 「米國における保險ブローカー制度」, 保險毎日新聞, 1993年 12月 16日字.

15) 美國下院エネルギー及び商業委員會, 「約束の不履行(Failed Promises)-保險會社の倒産」, 『週刊インシュアランス(損保版)』, 第3418號~第3425號(1989.6.14~8.2日) 参照.

이외에 기타 業務檢査, 業務改善命令, 具體的인 監督事項 등 消費者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검토·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IV. 保險仲介人制度 導入에 따른 課題

保險仲介人制度 導入時 어떠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 效果로서는 消費者의 保險利用 便利性이 제고되고 保險受配의 迅速性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否定的 效果로서는 既存 募集組織의 崩壞 憂慮, 언더라이팅 機能의 低下, 料率의 過當競爭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 세가지의 否定的 效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高찰이 필요하다. 첫째, 募集組織의 崩壞 憂慮이다. 우리나라의 모집조직 체계는 代理店, 募集人, 直扱 및 共同引受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直扱이 주로 취급하는 종목은 국제성을 띠고 있는 企業物件과 一部 特種保險이다. 상기 종목들은 총괄대리점도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부분을 직급이 차지하고 있으며 國內社 優先出再制度 및 料率求得協定 撤廢 등 再保險 自由化와 料率自由化가 이루어지면 國際的 仲介網을 가지고 있는 多國籍 保險仲介人이 거의 장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들 종목에서는 상당한 노하우와 국제적 중개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保險仲介人은 指揮官과 같은 役割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企業性保險分野는 보험중개인에 의해 席捲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성보험 분야의 既存 募集組織이 붕괴되고 붕괴된 보험조직이 家計性分野에 투입되어 가계성보험분야에서 기존의 모집조직이 무모한 경쟁을 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업계는 戰略的인

募集組織 養成 및 構築方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低下될 우려가 있다. 保險仲介人은 競爭的 再保險市場을 잘 알고 있고 原受保險社간의 過當競爭을 이용하여 요율의 배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원수보험사는 保有限度의 決定이나 언더라이팅의 決定에 있어서 보험중개인에게 좌지우지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契約擴大을 도모하기 위한 무리한 引受競爭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언더라이팅 기능의 강화와 保險開發院의 統計機能 및 料率算出技法을 강화하여 국내적으로 고도의 料率算出技法 및 언더라이팅 技法을 개발·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로 保險料率의 過當競爭이 유발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의 속성으로 볼 때 가장 저렴한 요율에 가장 높은 手數料를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保險契約를 중개하기 마련이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의 保險料 割引이나 保險料 引下 등 限界費用 以下の 치열한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過當競爭이 많은 副作用을 가져오고 끝내는 破滅的 競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美國 등의 事例를 들추지 않더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상기 세가지의 副作用 이외에도 많은 副作用 要因들이 존재한다. 예를들면 代理店과 仲介人의 協力關係가 지식과 기량 측면에서 불가능하게 되어 代理店이 一定手數料(Broker Commission Split)만을 분할받고 仲介人에게 隸屬化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외국 보험중개인이 國內의 優良危險만을 중개할 경우 不良物件만이 남게 되어 국내의 既存 募集組織은 不良物件의 획득을 위한 무모한 경쟁을 하게 될 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

하여 仲介人 制度가 도입되기 전까지 몇가지 課題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國內의 總括代理店 등이 전문지식과 기량을 더욱 높여 保險仲介人이 되거나 보험중개인과 대항하여 영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하여 중개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募集組織의 專門化, 大型化를 통한 質的 育成을 圖謀할 必要性이 있다. 또한 보험중개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企業의 危險管理 認識이 확산되고 一般化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仲介人制度는 危險管理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自生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닥아올 것이다.

保險仲介人制度는 獨立代理店이 도입되고 나서 法이 定한 一定期間이 경과된 후에 본격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副作用을 最小化하여 保險業界, 消費者, 國益에 上충됨이 없도록 本格導入까지 충분한 對應策을 講究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金致中, “英國의 保險브로커 監督制度에 關한 小考,” 『保險調査月報』 第17卷 5號, 1994.5
- 大韓損害保險協會 募集制度部, 『主要國의 保險募集制度』, 1994.5
- 申允富, 『英美海上再保險』, 삼화출판사, 1980.
- H.Cockerell & G.Shaw著, 崔龍一譯, 『英國의 保險브로커 制度』, 凡論社, 1994.3
- C.A.Williams, Jr. & R.M.Heins, *Risk Management & Insurance*, 5th ed., 1985
- R.L.Carter, *Economics & Insurance*, 2nd ed., Kluwer Publishing, 1978
- 美國下院エネルギー及び商業委員會, “約束の不履行(Failed Promises)-保險會社の倒産”, 『週刊インシュアランス(損保版)』, 第3418號 ~ 第3425號(1989.6.14~8.2日)
- 日吉信弘, “保險ブローカーとは何か”, 日本保險毎日新聞, 1994.3.14~6.3日字
- 日本損害保險協會, 『英國保險ブローカー關聯法規集』, 1993.6
- 澤登信義, “米國における保險ブローカー制度”, 保險毎日新聞, 1993.12.16日字